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December 18, 2023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베트남: OECD 필라 2 규정 입법

2023 년 11 월 29 일, 베트남 국회는 OECD 필라 2 규정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2024 년 1 월 1 일부터 해당 결의안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이 도입한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ve Rule, 이하 “IIR”) 및 적격소재국추가세액(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이하 “QDMTT”)은 OECD 의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Global Anti-Base Erosion, 이하 “GloBE”) 모델 규정과 전반적으로 그 맥락이 일치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국적기업은 사업 소재지국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최소 15%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대상 기업은 지난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연결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의 구성 기업입니다. 다국적기업 그룹의 구성 기업 중 관할 지역의 유효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베트남에서 추가 세액이 부과됩니다.
- 신고 및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QDMTT: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 IIR: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최초 도입연도의 경우 18개월)

KPMG 의견

베트남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베트남에서 각종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던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부담세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에 소재한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는 QDMTT의 도입에 따라 베트남 내 감면세액의 일정 부분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 부담세액이 증가하고, 관련된 신고 및 납부에 따른 행정부담이 증가합니다. 반면에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 다국적기업의 본사는 IIR 신고시 베트남 자회사에 대하여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한편 베트남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기존의 법인세 감면 혜택의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베트남 정부는 해외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식의 보상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OECD: 국가별 보고서 데이터 취합 결과 - 상당수의 다국적기업들은 고세율 국가에서도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최근 공개한 OECD의 국가별 보고서 데이터 분석결과 보고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신고된 낮은 수준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소득 중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명목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규 데이터 및 통계자료에 따르면, 명목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세제혜택을 받는 일부 다국적기업들은 실제로 낮은 수준의 실효세율에 과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OECD 및 G20 Inclusive Framework에서 합의된 다국적기업 소득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은 저세율 관할권 뿐 아니라 고세율 국가에서도 세원 확보의 기회를 새롭게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집계된 데이터 및 신규 분석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글로벌 총 과세소득(6,530억 달러) 중 약 37.1%(2,411억 달러)는 15% 미만의 실효세율에 과세되고 있습니다.
 - 15% 미만의 실효세율로 납세하는 다국적기업 중 약 56.8%는 고세율 국가에 납부하고 있으며, 실효세율 5% 미만으로 납세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중 20% 이상은 고세율 국가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 고세율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세제혜택으로 인해 많은 다국적기업은 실제로는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조세협약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

최신예규/판례: 이의-서울청-2023-0250 (2023.09.26)

제목: 신청법인이 국내외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기술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기각)

1) 처분개요 및 주요 사실관계

- 처분청은 신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신청법인이 〇〇〇〇~〇〇〇〇 사업연도에 국내외계열사로부터 '상표권(CI) 사용료' 〇〇〇억원을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중국법인으로부터 〇〇〇〇~〇〇〇〇 사업연도에 '기술이전에 대한 로열티' 〇〇〇억원(중국법인 매출액의 〇〇%)을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조세부담을 부담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하는 취지의 경정결의안 통보함
- 처분청은 신청법인에게 〇〇〇〇~〇〇〇〇 사업연도 법인세 〇〇〇〇억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신청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현재 행정소송(항소심)을 진행중임
- 신청법인은 세무조사 결과와 동일한 기준으로 〇〇〇〇~〇〇〇〇 사업연도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이하 "쟁점사용료")와 기술이전에 대한 로열티(이하 "쟁점기술료")를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함
- 신청법인은 당초 익금산입 하였던 쟁점사용료와 쟁점기술료를 익금에서 제외하고, 법인세 〇〇〇억원 환급 취지의 경정청구를 신청함
- 처분청은 신청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처분하였고, 신청법인은 처분청이 거부한 건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함

2) 쟁점

- ① 신청법인의 상표권을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익금산입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② 중국 현지법인에 이전한 제조기술에 대한 기술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3)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p>1. 신청법인은 국내외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법인 및 계열사들이 상표가치 제고를 위한 비용 지급을 통하여 유의미한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법인이 일방적으로 쟁점사용료를 수취해야 한다는 논거는 부당함 - 계열사들은 상표사용으로 초과수익을 누렸다는 근거가 없고, 산정된 쟁점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예관법률(이하 “국조법”), 기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시가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바, 쟁점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신청법인의 국내외계열사 중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청산 및 합병 등으로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비영업법인의 경우의 경우 상표권 사용에 대한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해외 판매법인은 거래에 대한 위험과 효익을 제한적으로 부담하는 단순 유통업자로 규정됨. OECD 무형자산의 이전가격 정책 지침서(2014)에서는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목적이 상품을 판매하는 목적으로만 국한되어 있고 이전가격 목적상 무형자산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지 않았을 때, 마케팅/도매활동을 하는 회사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기술됨 	<p>1. 신청법인이 쟁점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법인은 상표 출원·등록시점부터 현재까지 단독 상표권자로 등록되어 있고, 신청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국내 계열사들 대비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계열사들이 각자 광고선전비를 지출한 것은 각 계열사의 상품판매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출이므로, 전 계열사가 광고선전비를 지출하면서 상표가치를 제고했다고 볼 수 없음 - 쟁점 해외계열사들은 신청법인과 거래시 매출액의 일정률을 이익으로 보상받는 구조로서 매출액이 증가됨에 따라 순이익도 증가하므로 신청법인 소유 상표권의 브랜드 파워나 신뢰도 향상에 따라 매출액 및 순이익 증가로 효익을 얻게 됨 - 쟁점 해외계열사들은 영업활동 수행 시 쟁점상표를 이용함으로써 타사의 경쟁제품과 구별되는 경쟁력을 가지게 되어 경쟁제품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 또한, 쟁점 해외계열사는 해외 시장개척을 위해 시장조사, 거래처 영업 등의 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있어 단순 유통업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함

<p>2. 쟁점기술료는 중국법인으로부터 별도의 기술료를 수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법인은 이미 시장에 공개된 기본특허에 의한 기술을 제조공정에 사용하였으며, 신청법인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음 - 중국법인은 신청법인으로부터 계약서에 따른 노하우를 제공받은 것이 아닌 주재원 파견으로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주재원들이 현지 파견으로 시행착오를 통해 기술을 학습할 기회를 얻은 것임 - 신청법인의 쟁점기술료 회수방안 검토는 기술사용대가 회수 목적이 아닌 현지 공장 투자비용 회수 목적에서 검토한 것 임 	<p>2. 신청법인이 쟁점기술료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법인의 국내 ○○기술원 ○○○○ 연구개발팀 팀장은 문답 조사 시 팀의 연구개발 결과가 중국법인의 공장 설립 및 가동정상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내부적으로 작성한 기술이전계약서 초안 등에 기술정보를 중국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함 - 연구개발팀이 기술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로열티 지급 대상여부에 대한 내부검토 등은 신청법인이 제공한 기술은 단순한 인적용역이 아니라 로열티 지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이전임. - 신청법인은 20○○년부터 20○○년까지 내부적으로 중국법인으로부터 로열티 수취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내부문서 확인 결과, 기술료 수취 목적임을 확인함
----------------------------------------------------------------------------------------------------------------------------------------------------------------------------------------------------------------------------------------------------------------------------------------------------------------------------------------------------------------------------------	-----------------------------------------------------------------------------------------------------------------------------------------------------------------------------------------------------------------------------------------------------------------------------------------------------------------------------------------------------------------------------------------------------------------------------------------------------------------------------------

4) 판단

쟁점 1(쟁점사용료)

- ① 상표권자는 상표를 사용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상표가 경제적 가치가 결여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 상표를 사용한 그 자체로 경제적 효익을 얻었다고 보아야 하고, 상표권자로서 상표권 사용 허락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이며, 아무 대가 없이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거래행위로 판단해야 함
- ② 신청법인은 상표를 출원·등록한 후부터 이 건 상표의 상표권자로 단독 등록되어 있었고 상표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할 필요성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합리성 없이 사용료 수취를 포기하였고, 이는 국조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됨

쟁점 2(쟁점기술료)

- ① 신청법인이 개발한 ○○○○ 제조기술은 비공개 기술정보에 해당하고, 담당 팀장으로부터 연구개발팀의 연구결과가 중국법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내부적으로 작성한 계약서 초안에 의하면 신청법인은 중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로열티 관해 중국법인 매출액의 3~4% 정도로 검토한 사실이 존재함
- 4. 신청법인이 중국법인에 ○○○○ 제품 관련 기술정보 및 기술적 노하우를 이전하고도 그 대가로 로열티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은 국조법제4조 제1항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고, 정상가격도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다고 판단됨

멕시코, 연방 세법 개정에 따른 Dictamen Fiscal(세무 감사) 의무화

- 감사인에게 관세 등 납부 의무 준수 여부 검토 및 과세당국 보고 권한 부여

1) 개요

- Dictamen Fiscal은 멕시코의 세무감사보고서로, 2022년 멕시코 연방세법(Federal Tax Code)이 개정되면서 연간 매출액 1,779,063,820MXN (한화 약 1,339억원) 초과 업체에 대해서는 의무감사로 전환됨.
- 또한, Dictamen Fiscal에 감사인이 감사대상업체의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한 납부의무의 준수여부 또한 검토하여 표시하도록 개정되었음.
- 따라서, 관세 및 부가세 관련 미준수 사항 발견 시 상세 내용을 감사 보고서에 표시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관세 등 납세 의무를 미준수한 사실 또는 그와 같은 미준수가 법률상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감사인은 이를 과세당국에 고지하여야 함.

2) 관세 등 납부의무 미준수 의견에 따른 조치

- 감사인이 Dictamen Fiscal에 해당 업체가 관·부가세 납부의무를 적정하게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기재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정식 심사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
- Dictamen Fiscal의 의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이와 같은 행정 처벌 또는 형벌은 반드시 정식 심사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감사인이 관·부가세 납부의무의 미준수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Dictamen Fiscal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이 3년간 정지됨.

3) 감사인의 관세 등 납부의무 관련 검토 방법

- 감사인의 관세 등 납부에 대한 Review 방법에 대하여 과세당국 측에서 별도로 발표한 지침 및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바 감사인의 시각에 따라 자율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Dictamen Fiscal 상 각 분야에 대해 “적격” 또는 “부적격”과 같이 별도 표기하는 부분은 없음. 다만, 감사인은 감사 대상자가 관·부가세 납부 의무를 다하고 있는 지 여부

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동 납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미준수에 대한 상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관세 등과 관련된 검토 기준은 마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개정된 연방세법 상 “관세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수준의 선언적인 언급만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구체적인 검토 기준 및 방법론에 대한 정립이 수행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관세 등 무역 분야의 경우 감사인의 전문 분야가 아니므로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관세/대외무역)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며, 해당 전문가는 Dictamen Fiscal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감사인에게 Finding한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KPMG 의견]

Dictamen Fiscal에 관세 분야 검토 의견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연방세법(Federal Tax Code)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다른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검토 결과에 대한 처리 방안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반면에, 감사인에게 관련 의무 해태 시 ‘3년 자격 정지’ 등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멕시코 진출 기업의 경우 Dictamen Fiscal 상 관세 등 관련 부정적인 내용의 포함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한 사전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